

의안번호	제 416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9월 일 (제283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9월 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9월 3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기 조성 및 식약청 식·의약품 업무 지방 이관에 따른 전담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 사무를 신설·이관 조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【실국별 분장사무 신설·이관】

- 신설(추가)
 - 균형발전국 :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
 - 보건복지여성국 :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
- 이관 (건설방재국 → 균형발전국)
 - 오송신도시,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
13. 오송 신도시,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

제10조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밀레니엄타운,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

제12조 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보건, 의무, 방역,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
13. 위생 및 식품·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균형발전국)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 1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2.~14. (생략)</p>	<p>제9조(균형발전국)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3. 오송 신도시,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4.~16.(중전의제12호부터제14호까지와 같음.)</u></p>
<p>제10조(건설방재국) 건설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 10. (생략)</p> <p><u>11. 오송신도시, 오송생명과학단지, 밀레니엄타운,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10조(건설방재국) 건설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밀레니엄타운,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12조(보건복지여성국)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 11. (생략)</p> <p><u>12. 보건,의무,약무,방역,정신재활 및 위생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2조(보건복지여성국)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보건, 의무, 방역,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3.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</u></p>

관계법령 발취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[별표 1]

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실·국·본 부
서울특별시		14개 이내
광역시	인구 300만 이상 ~ 500만 미만	12개 이내
	인구 200만 이상 ~ 300만 미만	11개 이내
	인구 200만 미만	10개 이내
도	경기도	18개 이내
	인구 300만 이상 ~ 400만 미만	11개 이내
	인구 200만 이상 ~ 300만 미만	10개 이내
	인구 100만 이상 ~ 200만 미만	9개 이내

비고 : 실·국·본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·국·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·국·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.